

정 관 [1995. 2. 7 정관 제1호]

전부개정	2012. 4. 10	정관 제35호
일부개정	2012. 12. 7	정관 제36호
	2013. 1. 25	정관 제37호
	2014. 12. 16	정관 제38호
	2015. 4. 7	정관 제39호
일부개정	2017. 2. 27	정관 제40호
일부개정	2018. 2. 12	정관 제41호
일부개정	2018. 4. 1	정관 제42호
일부개정	2018. 4. 11	정관 제43호
일부개정	2019. 6. 11	정관 제44호
일부개정	2020. 4. 1	정관 제45호
일부개정	2020. 8. 25	정관 제46호
일부개정	2021. 4. 1	정관 제47호
일부개정	2023. 6. 1	정관 제48호
일부개정	2023. 12. 4	정관 제49호
일부개정	2025. 6. 30	정관 제50호
일부개정	2025. 12. 11	정관 제51호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이 법인은 “재단법인 경기연구원”이라 하고, 그 영문 이름은 “Gyeonggi Research Institute”로 표기한다. (개정 2015.4.7.)

제2조(목적) 재단법인 경기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은 국가의 발전 및 경기도와 그 소속 시·군의 경쟁력 강화,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 과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·연구함으로써 국가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5.4.7.)

제3조(소재지) 연구원은 경기도 수원시에 사무소를 둔다.

제4조(사업)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도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·연구
2. 경기도, 경기도의회 및 그 소속 시·군의 주요 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·연구
3. 경기도, 경기도의회 및 다른 기관·단체로부터의 각종 연구사업의 수탁
4.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·협력
5. 도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 현안 조사·연구
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부대사업 및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2장 재산 및 회계

제5조(재산) ①연구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되, 연구원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현금 99억 6,125만원이며, 현재 기본재산은 [별표1]과 같다.(개정 2020.8.25.)

1. 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·민간단체·기업 및 개인의 출연금과 기탁금
2. 양여 또는 기부·기탁으로 받은 토지와 건물
3. 보통재산 중 이사회가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
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.

④연구원의 기본재산을 양도·증여·교환 또는 대부·사용하게 하거나 담보로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6조(기금) ①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③기금의 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④기금은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7조(운영 재원)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경기도의 출연금, 기금의 수익, 수탁사업의 수행에 따른 수입, 출판물 판매대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며,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8조(회계연도)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경기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9조(사업계획 등의 승인) ①연구원의 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은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각각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고,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결정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.

제10조(결산서 등의 제출)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·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
2.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(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)
3. 그 밖에 결산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

제11조(잉여금 처리)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먼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며, 그 이후 잔여금이 있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한다.

제3장 임 원

제12조(임원 등) ①연구원에 이사장 1명과 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 등 임원을 둔다.

②임원 중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

제13조(이사장) ①이사장은 노동이사를 제외한 비상근이사 중 이사회에서 호선한다.(개정

2019. 6. 11)

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③이사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고 원장도 업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이사를 제외한 비상근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업무를 대행한다.(개정 2012.12.7., 2019.6.11)

제14조(이사) ①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.

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.

1. 경기도 기획조정실장
2. 원장(제16조제3항의 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)
3. 삭제(2012.12.7)

③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가 임명하는 자가 된다.(개정 2014.12.16.)

④제3항의 선임직 이사 중 1명은 노동이사로 하며, 노동이사는 근로자 투표를 거쳐 선발된 자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가 임명하는 자가 된다. 근로자 투표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(신설 2019. 6. 11)

⑤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제15조(감사) ①감사는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로 구분한다.

②당연직 감사는 경기도의 연구원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.

③선임직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14.12.16.)

④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수행한다.

1. 연구원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
2. 연구원의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한 감사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경기도지사에게 보고
4.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
5.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
6. 이사회의 회의록에 서명 날인

⑤감사는 이사를 겸임할 수 없다.

제16조(원장) ①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(개정 2014.12.16. 2023. 6. 1)

②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,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, 그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.

③원장이 궐위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(개정 2018.2.12. 2023. 6. 1)

④ (신설 2018.2.12., 삭제 2023. 6. 1.)

제17조(임원의 임기) ①이사장 및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이를 연임할 수 있다.

②선임직 이사 및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이를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노동이사의 연임을 위해서는 제14조 제4항의 선발절차를 거쳐야한다.(개정 2019. 6. 11)

③당연직 이사 및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④노동이사의 임기는 제17조 제2항에 따르며, 노동이사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의 임기와 관계없이 노동이사의 임기도 당연 종료된다.(신설 2019. 6. 11)

제18조(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) ①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해당될 경우 임원이 될 수 없으며, 임기 중 해당 될 경우 당연 퇴직한다.(개정 2014.12.16.)

②이사회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.(개정 2014.12.16.)

1. 고의 또는 과실로 연구원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한 경우
2. 그 밖에 더 이상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경기도지사의 요구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해임 요구가 있는 경우

제19조(비상근 임원에 대한 대우) ①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,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4장 이사회

제20조(구성)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
제21조(소집)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
②정기이사회는 연 1회,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각각 소집한다.

1.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15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3. 그 밖에 이사장이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③이사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사회 소집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④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이사회 소집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 전원이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22조(의결) ①이사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연구원의 예산·결산,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·처분(대부·사용허가를 포함한다)과 관리에

관한 사항

2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 3. 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
 4.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
 5. 연구원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 6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7.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8. 연구원의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
 9.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상 필요하여 이사장 또는 원장이 부치는 사항
- ②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관하여는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, 제1항제3호·제4호에 관하여는 재적 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이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 정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 의결의 방식에 따라 회의에 부칠 수 있다.
- ⑤제4항에 따른 서면 의결은 재적 이사 과반수의 서면 참여로 성립하며, 서면 참여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제3항의 적용을 받아 의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의결할 수 없다. (신설 2025.12.11.)

제23조(제척)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과 관련하여 본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. 다만,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이사장의 결정으로 해당 제척 대상자를 이사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.
2. 임원 본인과 연구원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을 의결할 때

제24조(회의록) 연구원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,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 이사 2명과 감사 1명이 기명 날인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5장 직제 및 직원

제25조(직제 및 정원) ①연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구원에 부원장, 연구기획실, 산업통상연구실, 인구사회연구실, 기후환경에너지연구실, 자치혁신연구실, 도시주택연구실, 모빌리티연구실, AI연구실, 경기의정연구센터, 북부발전연구실, 미래전략연구실, 감사실, 행정지원실을 둔다.(개정 2014.12.16., 2017.2.27., 2018.4.1., 2019.6.11., 2023.6.1, 2025.6.30., 2025.12.11.)

②정원은 169명으로 하며 제1항에 따른 기구와 그 사무분장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(개정 2014.12.16., 2019.6.11., 2020.8.25., 2021.4.1., 2023.12.4.)

제25조의2(부설기관) ①경기도의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·객관적·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‘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’를 둔다.

②부설기관의 정원은 18명으로 하며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(본조신설 2018.4.11.)(개정 2020.4.1., 2021.4.1.)

제26조(직원) ①연구원의 모든 직원은 원장이 임면하고, 부원장, 연구기획실장, 산업통상연구실장, 인구사회연구실장, 기후환경에너지연구실장, 자치혁신연구실장, 도시주택연구실장, 모빌리티연구실장, AI연구실장, 북부발전연구실장, 미래전략연구실장, 경기의정연구센터장, 감사실장, 행정지원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(개정 2014.12.16., 2018.4.1., 2019.6.11. 2023.6.1, 2025.6.30., 2025.12.11.)

②직원의 임면·승진·보수·복무기준 및 징계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27조(계약직 직원 등) ①원장은 연구과제 수행, 휴직자 대체 등 필요한 경우 계약직 직원 등 정원 외 인원을 채용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.(개정 2023.12.4.)

②제1항의 정원 외 인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(개정 2023.12.4.)

제28조(고문변호사) ①원장은 직원이 정당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·민사 사건에 피소된 경우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고문변호사 위촉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6장 보 칙

제29조(위원회) ①연구원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심의·의결기구로서 연구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연구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30조(정관의 변경)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31조(해산) 이사회는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가 지속된 때에는 재적 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연구원의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. 이 경우 서면에 의한 결의는 할 수 없다.

제32조(잔여재산의 귀속) 연구원을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되,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.

제33조(광고 사항 및 방법)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연구원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은 「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주된 보급지역을 경기도로 하는 일간신문에, 그 밖의 사항은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한다.

제34조(규정의 제정 등) ①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·폐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

제35조(준용)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,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

법 시행령 및 「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르며, 그 밖의 사항은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(개정 2014.12.16. 2015.4.7.)

부 칙(2012. 4.10)

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12. 7)

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하되, 제14조의 개정사항은 이 정관 시행이후 변경되는 당연직 이사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13. 1.25)

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4. 12.16)

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 4. 7)

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2. 27)

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 2. 12)

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 4. 1)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부원장 및 대외협력처장의 재임기간을 포함한다.

부 칙(2018. 4. 11)

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 6. 11)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부원장, 본부장의 재임기간을 포함한다.

부 칙(2020. 4. 1)

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 8. 25)

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 4. 1)

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3. 6. 1)

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3. 12. 4.)

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5. 6. 30.)

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5. 12. 11.)

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 (신설 2020.8.25., 개정 2025.12.11.)

연구원의 기본재산(제5조 관련)

재 산 구 분	금 액	비 고
기본재산	금 4,900,000,000원 (금 사십구억원)	